

외국법연구

▶ EU법상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 / 강기홍

EU법상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 (Richtlinie 2004/17/EG)*

강기홍**

I. 서 언

지난 통권 제5호에서는 EU법상 공동조달과 관련된 3개의 지침들(RL 2004/18/EG, RL 2004/17/EG, RL 2007/66/EG) 중에서 첫 번째인 공공분야 계약지침(Richtlinie 2004/18/EG)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것의 두 번째 지침에 해당되는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4/17/EG)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4/17/EG)

1. 일반론

공공분야 계약지침(RL 2004/18/EG)이 건설 및 그의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라 한다면, 여기에 소개하는 RL 2004/17/EG은 물, 에너지, 교통, 우편 그리고 서비스에 관한 공공조달지침이라 할 수 있는 바, RL 2004/18/EG에 대해 다소 소프트적인 공공조달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2012. 2), 502면 이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2004/17/EG 지침의 체계

동 지침은 총4장, 7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물, 에너지, 교통, 우정사업 영역에서의 계약에 관한 지침이다. 제1장에서는 계약과 경쟁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2장에서는 계약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3장에서는 우편사업과 같은 서비스 영역에 있어 경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통계상의 의무, 집행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U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 2004/17/EG¹⁾

2004. 3. 31 유럽의회와 참사원의 물, 에너지, 교통제공 및 우정사업 영역에서 계약발주자를 통한 낙찰(落札)의 조정을 위한 지침(Richtlinie 2004/17/EG)

목 차

제1편 계약과 경쟁을 위한 일반규정

제1장 기본 용어

제1조 정의

제2장 적용을 받는 행위 및 도급자의 정의

제1부 지위

제2조 도급자

제2부 행위

제3조 가스, 난방 및 전기

제4조 물

제5조 공급망

제6조 우편서비스

제7조 항구 및 공항, 그리고 석유, 가스, 석탄 또는 고체연료의 탐사 혹은 시추

제8조 도급자의 목록

제9조 수 개의 행위를 포함하는 계약

제3장 일반원칙

제10조 계약낙찰 원칙

제2편 계약을 위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경제적 거래자

제12조 WTO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조건

제13조 신뢰(Vertraulichkeit)

제14조 대강합의(Rahmenvereinbarungen)²⁾

제15조 신속조달시스템³⁾

제2장 한계가액⁴⁾과 예외(Schwellenwerte und Ausnahmen)⁵⁾

제1부 한계가액

제16조 공공계약을 위한 한계가액

제17조 계약, 기본협약 및 신속조달시스템의 추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2부 계약 및 개발허가, 특별조치에 속하는 계약	
제1과	
제18조 공사 및 용역의 개발허가	
제2과 모든 도급자 및 모든 종류의 계약에 적용되는 배제조항	
제19조 제3자에게 재판매 혹은 임대 목적으로 낙찰되는 계약	
제20조 적용되는 행위의 영위 이외의 목적 혹은 제3국에서 그러한 행위의 영위를 위해 낙찰되는 계약	
제21조 비밀이거나 특별한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계약	
제22조 국제규정에 따라 낙찰되는 계약	
제23조 계열기업, 공동기업 혹은 공동기업의 일부를 형성하는 도급자에 낙찰되는 계약	
제3과 모든 도급자에 적용가능하나 오직 용역계약에만 적용 가능한 배제 조항	
제24조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정 용역에 관한 계약	
제25조 배타적 권리에 근거하여 낙찰되는 용역계약	
제4과 특정 도급자에만 적용 가능한 배제조항	
제26조 물의 구매 및 에너지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의 공급에 대한 특정 도급자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	
제5과 특별조치, 중앙구매기구 및 직접적인 경쟁에의 노출이 되는 경우의 일반절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	
제27조 특별조치에 속하는 계약	
제28조 유보계약	
제29조 중앙구매기구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 및 기본협약	
제30조 일정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경쟁에 노출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제3장 용역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	
제31조 Annex XVII A에 열거된 용역계약	
제32조 Annex XVII B에 열거된 용역계약	
제33조 Annex XVII A와 Annex XVII B에 열거된 용역을 포함하는 혼합 용역계약	
제4장 규격서 및 계약서류를 규율하는 상세규정	
제34조 기술규격	
제35조 기술규격에 대한 의사전달	
제36조 대안입찰	
제37조 하청	
제38조 계약이행을 위한 조건	
제39조 조세, 환경보호, 고용보호 조항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의무	
제5장 절차	
제40조 공개경쟁, 제한경쟁 및 협상 절차의 사용	
제6장 공표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	
제1부 공고의 공표	
제41조 정기적 조건수용표시입찰 공고 및 자격제도의 존재에 관한 공고	
제42조 경쟁에 대한 요청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공고	
제43조 계약낙찰공고	
제44조 공고의 공표 서식 및 방법	
제2부 시한	
제45조 참가요청서 및 입찰서 접수를 위한 시한	

제46조	공개경쟁절차 : 규격서, 부가적인 서류 및 정보
제47조	입찰서 제출 또는 협상 참가를 위한 초청
제3부	의사전달 및 정보
제48조	의사전달에 적용 가능한 규정
제49조	자격 신청자, 후보자 및 입찰자에 대한 통보
제50조	보관될 낙찰에 관한 정보
제7장	절차의 집행
제51조	총칙
제1부	자격 및 실적 선정
제52조	행정적, 기술적 혹은 재정적 조건에 관한 상호 인정 및 증명서, 시험 및 증거자료
제53조	자격제도
제54조	실적 선정 기준
제2부	계약의 낙찰
제55조	계약낙찰기준
제56조	전자경매의 활용
제57조	비정상적으로 저가인 입찰
제3부	제3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입찰과 그러한 국가들과의 관계
제58조	제3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입찰
제59조	공사, 물품 및 용역 계약에 관한 제3국과의 관계
제3편	용역(서비스)과 디자인 경쟁을 규율하는 규정
제60조	총칙
제61조	한계가액
제62조	배제되는 디자인 경쟁
제63조	공지에 관한 규정 및 투명성
제64조	의사전달 수단
제65조	디자인 경쟁의 준비, 참가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제6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제4편	통계의무, 집행권한 및 최종 규정
제67조	통계 의무
제68조	자문위원회 절차
제69조	한계가액의 수정
제70조	개정
제71조	지침의 이행
제72조	감독체계
제73조	폐지
제74조	발효
제75조	수신처
부록(ANNEX)	
Annex I	가스 혹은 난방의 운송 또는 공급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II	전기의 생산, 운송 혹은 공급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III	식수의 생산, 운송 혹은 공급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IV 철도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V 도심철도, 전차, 트롤리버스 혹은 버스 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VI 우편서비스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VII 석유 혹은 가스의 탐사 및 시추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VIII 석탄 및 기타 고체연료의 탐사 및 시추 분야에 속하는 도급자
 Annex IX 해양, 내륙항만 혹은 기타 터미널 시설분야에 속한 도급자
 Annex X 공항 설비 분야에 속한 도급자
 Annex XI 제30조(3)에 해당하는 공동체 법령 목록
 Annex XII 제1조(2), (b)에 규정된 행위의 목록
 Annex XIII 계약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IV 자격제도의 존재에 관한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V A 조건수용표시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V B 경쟁에 대한 요청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매자 정보에 관한 정기적 공고
 의 공표에 관한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VI 계약낙찰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VII A 제31조에서 의미하는 용역
 Annex XVII B 제32조에서 의미하는 용역
 Annex XVIII 디자인 경쟁 공고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IX 디자인 경쟁의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
 Annex XX 공표에 관한 주요사항
 Annex XXI 특정 기술규격에 대한 정의
 Annex XXII 제45조에 규정된 시한의 요약 도표
 Annex XXIII 제59조 (4)에서 의미하는 국제 노동법 조항
 Annex XXIV 경쟁의 설계 및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입찰서, 참가신청서 자격 신청서의 전자
 적 접수를 위한 장치에 관련되는 요구조건
 Annex XXV 국내입법 및 이행 시한
 Annex XXVI 개정대비표

- 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4:134:0114:024:de:PDF>. 이것의 번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EU 통합 조달지침 및 공공조달시장 개관(2006)(<http://www.pps.go.kr/ebook/gebook/EU/VIEW.HTM>)의 것을 재인용하였다. 여기 조달청 자료는 번역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으나 여기서는 차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2)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김대인,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2009), 296면).
- 3) 역동적 구매시스템(dynamic purchasing)이라 옮기는 경우도 있다(김대인, 위의 논문, 296면).
- 4) 2009년 독일 조달법의 개정으로 한계가액이 기존보다 하향조정되었는데, 공공조달대금이 낮은 조달에 대해서도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M. von Wietersheim/U. Schranner, Das neue Vergaberecht(2010), S. 13 ff.; J.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2. Aufl.(2010), S. 150 ff. 참조.
- 5) 기준금액이라 옮기는 경우도 있다(조달청, EU 통합 조달지침 및 공공조달시장 개관(2006), 227면: <http://www.pps.go.kr/ebook/gebook/EU/VIEW.HTM>).

3.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한 의미

동 지침은 RL 2004/18/EG가 담고 있는 공공건설공사와는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RL 2004/18/EG가 담고 있지 않은 물, 에너지, 교통, 용역(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 양자는 공공계약에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본 지침의 제3편(용역(서비스)과 디자인 경쟁을 규율하는 규정)에는 용역(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관한 공공조달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가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발주한다고 할 때, 이때의 도급계약은 우선적으로 RL 2004/18/EG의 적용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서관의 디자인이나 도서관 내부에 필요한 전자이용프로그램 등의 용역(서비스)분야는 RL 2004/17/EG의 적용을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본 지침은 공공건설계약에 관한 지침(RL 2004/18/EG)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EU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숙지를 요하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6) 한계가액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참고문헌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2012)

김대인,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2009)

조달청, EU 통합 조달지침 및 공공조달시장 개관(2006)

(<http://www.pps.go.kr/ebook/gebook/EU/VIEW.HTM>)

M. von Wietersheim/U. Schraner, Das neue Vergaberecht(2010)

J.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2. Aufl.(20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4:134:0114:024:de:PDF>

